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bout The Tax Audit

김진섭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부

Jin-Sep Kim(kjinsep@pnu.ac.kr)

요약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세무조사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무조사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게서 분석대상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세무조사 | 세무대리인 | 납세자 | 조세 | 조세공평성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the tax audit between a tax representative and a taxpayer and in the recognition of the tax audi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a tax representative and a taxpayer, and an analysis has been made to heighten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a system of the tax aud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a difference in a analysis of a subject variable in both a tax representative and a taxpayer.

An alternative policy is required to promot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tax audit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n the future.

■ keyword : | Tax Audit | Tax Agent | Taxpayer | Tax | Fair Taxation |

I. 서론

현행 조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와 같은 성실신고의 보장수단이 없다면 조세의

정의를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공평한 세 부담과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세수를 확보하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71205-001
접수일자 : 2007년 1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1월 19일
교신저자 : 김진섭, e-mail : kjinsep@pnu.ac.kr

고 자진신고납부 수준을 높이며, 공평한 세무조사를 집행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결국 세무조사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갈등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등의 연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의 제도적 개선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무조사제도의 법률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세무조사제도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납세자 계층간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세무조사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방법을 설계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실증분석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실증 연구를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T-test분석, 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택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여부를 검증한다.

II. 선행연구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가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탈루된 세금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추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공평과세 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에는 첫째, 세무공무원이 조세채권자를 대신하여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의 신고의 경정 또는 과세처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과세처분을 위한 조사, 둘째,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조세채권 실현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

세징수를 위한 조사, 셋째, 조세권리구제절차에 있어 쟁점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넷째, 조세법칙사건에 있어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세법칙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통상 세무조사라면 조세채권의 확정을 위한 첫 번째 세무조사를 뜻하며 이는 일반 세무조사로서 국가의 조세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세무행정상의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로 정대회(1992)는 세무조사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고 납세자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채무의 확정절차로서의 질문조사권에 의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법칙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6].

이창훈(1999)는 조세법 및 조세법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면서 현행 조세법처벌제도가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법칙 사건집행에 있어서 법칙사건조사와 효과를 최대한 제고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법칙사실 적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현행 특별세무조사 대신 엄격한 기준 하에 조세법칙조사로 대체시켜 탈세행위를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관공무원과 같은 법칙사건 조사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전형수(2002)는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고찰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들을 세무행정 기본개념인 적법성, 효율성, 공평성, 민주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세무조사의 효율성, 공평성의 문제로서는 조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조사체계, 조직의 개편, 성실납세유도를 위한 세무조사영역의 확장과 엄정성 제고, 세무조사의 과학화, 전문화 특히 국제조사, 전산조사능력의 배양 등 새로운 조사기법의 개발 문제를 연구했으며, 성실납세 자동검증을 위한 과세자료 수집체계 확립과 납세정보의 정부기관 간 공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5].

III.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의 세무조사범위는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위하여 행하는 실시조사로서, 조세법칙조사를 제외한 것으로 하며, 세무조사는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특정한 납세의무자의 세무관련 실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식하고 또한 판단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3.1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인식 차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선별하였고, 인지도 변수는 7가지 변수, 즉 세무조사자 인원, 전문화 및 재량권,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세무조사의 업종별 전문화, 세무조사의 비율, 엄정성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 차이가 없다.
- <가설 2>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 <가설 2-1>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 <가설 2-2>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세무조사의 인지도 변수를 선정하였고, 인구통계학적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 변수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세무조사의 인지도를, 독립변수로 인구통계학

적 변수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t-test와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1) 세무조사자의 인원

세무조사자는 세무조사업무이외에 과세자료처리, 각종 확인·조사업무 등 납세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평과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특히 해외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한 신규 조사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인력의 양적 부족현상 해소는 시급한 과제이다.

(2) 세무조사자의 전문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은 경제규모의 확대, 급속한 다양화 추세, 글로벌화 등 세무환경의 복잡·다양성을 비추어 볼 때 매우 필요한 문제이다.

(3) 세무조사자의 재량권

적정한 재량의 행사란 충분하여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재량수권의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며,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행사는 재량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세무조사자의 재량권 정도가 납세자의 공평성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과 관련하여, 그 선정의 방법에 따라 전산선정과 수동선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산선정에 있어서는 컴퓨터의 분석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수동선정의 경우에는 선정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자의(恣意)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비객관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도 공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관한 긍정적 공

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5) 세무조사의 업종별 전문화

세무조사의 업종별 비전문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종별 조사전문화를 통해 업종별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전문조사자를 양성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6) 세무조사의 비율

세무조사 비율이 적정한지, 조사비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수 엄선, 강력한 조사방침에 따라 조사건당 추정세액은 높아져 가고 있으나 세무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설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8].

(7) 조사의 엄정성

탈세행위에 대한 범칙조사가 미진하여 탈세법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탈세에 대한 죄의식 형성은 커녕 오히려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납부를 조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V. 실증분석

4.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과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항목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세무조사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내용에 근거하여 세무조사시 판단의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측정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고, 기타 질문사항은 각 문항에 적합하게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152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세무대리인 47부, 납세자 121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4.2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4.2.1 기술통계량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기초적인 특성은 가족, 연령, 소득, 학력, 성별, 결혼여부로 구분하였고, 이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기술통계량

	인구통계학적 요인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분산
성별	남	128	76.2	1.238	0.427	0.182
	여	40	23.8			
연령	30세 이하	20	11.9	2.375	0.809	0.655
	40세 이하	80	47.6			
	50세 이하	53	31.5			
	51세 이상	15	8.9			
학력	중졸이하	4	2.4	3.161	0.993	0.986
	고졸	59	35.1			
	대학생	11	6.5			
	대졸이상	94	56.0			
소득	1,000만원 이하	7	4.2	2.238	0.528	0.278
	4,000만원 이하	115	68.5			
	8,000만원 이하	45	26.8			
	8,000만원 초과	1	.6			

표본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총 168개의 설문지를 통하여 [표 2]와 같이 8개)의 설문항목에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뢰성분석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세무조사의 공정성 (A1)	2.7500	.9773	.7686
세무조사원의 인원 (A2)	2.9821	1.0117	.7217
세무조사원의 전문성 (A3)	3.7143	.8900	.6969
세무조사원의 재량권 (A4)	2.6488	.9612	.7719
세무조사대상자 선별정도 (A5)	3.5119	.9413	.7108
세무조사의 업종별 전문화(A6)	3.7143	.9034	.7029
세무조사의 비율 (A7)	3.2619	.9741	.7272
세무조사의 엄정성 (A8)	3.8155	.9198	.7055
F값	54.6715	p값	0.0000
Alpha	0.7529	Standardized item alpha	0.7573

4.1.2 가설 1의 검증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

1) 모든 분석결과표에 <표 2>와 마찬가지로 변수들에 대해 A1~A8 적용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많은 인식도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공평성 인식은 t값 10.251(p값 0.000)으로서 유의확률 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무조사원의 인원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이 되었으며, 재량권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이 되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원의 인원이 부족하여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하며, 세무조사원이 많아야 세무조사의 질과 공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납세자는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현재의 인원과 전문성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세무조사인식도 차이분석

세무조사인식도변수	인원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A1	세무대리인	47	3.72	.743	10.251	0.000***
	납세자	121	2.37	.776		
A2	세무대리인	47	3.53	1.018	4.653	0.000***
	납세자	121	2.77	.929		
A3	세무대리인	47	4.09	.747	3.476	0.001***
	납세자	121	3.57	.902		
A4	세무대리인	47	2.49	.831	-1.343	0.181
	납세자	121	2.71	1.004		
A5	세무대리인	47	3.85	.834	2.978	0.003***
	납세자	121	3.38	.951		
A6	세무대리인	47	3.85	.807	1.225	0.222
	납세자	121	3.66	.936		
A7	세무대리인	47	3.17	.985	-0.759	0.449
	납세자	121	3.30	.972		
A8	세무대리인	47	4.13	.536	2.797	0.006***
	납세자	121	3.69	1.007		

* p < 0.1, ** p(0.05, *** P(0.01)

세무조사대상자의 선별정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이 되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별정도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의 선별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업종별 전문성과 세무조사의 비율에 대

해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세무조사의 엄정성은 t값 2.797(p값 0.006)로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조사가 더욱 엄정해야만 하며, 조세회피성향을 억제하고 납세자간의 공평성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도 세무조사가 엄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세무대리인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현행의 세무조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적 측면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후속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판단된다.

4.1.3 가설의 검증

(1) 성별에 따른 세무조사인식도 차이분석

세무대리인(남 : 41명, 여 : 6명)과 납세자(남 : 87명, 여 : 34명)의 성별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4]와 [표 5]와 같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조사 인지도 변수 중 세무조사대상자의 선별 정도에 대하여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이 되었으나, 나머지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경우에는 모든 인지도 변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들의 성별을 통해 차이분석을 한 결과 남자와 여자간에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인지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남녀간에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세무대리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세무대리인	A1	남	3.68	0.756	-0.976	0.334
		여	4.00	0.632		
	A2	남	3.56	1.001	0.507	0.614
		여	3.33	1.211		
	A3	남	4.10	.700	0.296	0.769
		여	4.00	1.095		

A4	남	2.54	0.840	1.019	0.314
	여	2.17	0.753		
A5	남	3.98	0.724	2.883	0.006***
	여	3.00	1.095		
A6	남	3.88	0.781	0.595	0.555
	여	3.67	1.033		
A7	남	3.27	0.975	1.829	0.074
	여	2.50	0.837		
A8	남	4.12	0.557	-0.189	0.851
	여	4.17	0.408		

* p < 0.1, ** p<0.05, *** P<0.01

표 5. 납세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납세자	A1	남	2.34	0.818	-0.612	0.542
		여	2.44	0.660		
	A2	남	2.75	0.927	-0.188	0.851
		여	2.79	0.946		
	A3	남	3.58	0.921	0.310	0.757
		여	3.52	0.861		
	A4	남	2.64	1.056	-1.178	0.241
		여	2.88	0.844		
	A5	남	3.43	0.948	1.048	0.297
		여	3.23	0.955		
	A6	남	3.71	0.963	0.968	0.335
		여	3.52	0.861		
	A7	남	3.28	0.975	-0.183	0.855
		여	3.32	0.976		
	A8	남	3.71	1.010	0.321	0.749
		여	3.64	1.011		

* p < 0.1, ** p<0.05, *** P<0.01

(2) 연령에 따른 세무조사인식도 차이분석

세무대리인(30세이하 : 3명, ~40세이하 : 20명, ~50세이하 : 18명, 51세이상 : 6명)과 납세자(30세이하 : 17명, ~40세이하 : 60명, ~50세이하 : 35명, 51세이상 : 9명)의 연령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인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6]과 같다. 세무조사의 공정성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과 30세 이하에서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 외의 다른 연령층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제외한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변수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표 6. 세무대리인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A1	30세 이하	4.00	0.000	2.942	0.044**	
	40세 이하	3.40	0.598			
	50세 이하	4.06	0.725			
	51세 이상	3.67	1.033			
A2	30세 이하	4.33	0.577	0.878	0.460	
	40세 이하	3.55	0.887			
	50세 이하	3.33	1.237			
	51세 이상	3.67	0.816			
A3	30세 이하	4.33	0.577	0.281	0.839	
	40세 이하	4.00	0.725			
	50세 이하	4.17	0.786			
	51세 이상	4.00	0.894			
A4	30세 이하	3.00	0.000	0.719	0.546	
	40세 이하	2.55	0.686			
	50세 이하	2.44	0.984			
	51세 이상	2.17	0.983			
A5	30세 이하	3.33	1.528	0.445	0.722	
	40세 이하	3.85	0.745			
	50세 이하	3.89	0.832			
	51세 이상	4.00	0.894			
A6	30세 이하	4.33	0.577	0.485	0.695	
	40세 이하	3.80	0.834			
	50세 이하	3.89	0.758			
	51세 이상	3.67	1.033			
A7	30세 이하	2.67	1.155	1.517	0.224	
	40세 이하	3.30	0.733			
	50세 이하	3.33	1.188			
	51세 이상	2.50	0.837			
A8	30세 이하	4.00	0.000	0.909	0.444	
	40세 이하	4.00	0.459			
	50세 이하	4.28	0.669			
	51세 이상	4.17	0.408			

* p < 0.1, ** p<0.05, *** P<0.01

연령별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의 세무조사보다 현재의 세무조사가 더 강화되었고 과거에는 세무비리가 많았으나, 세무조사는 형식과 인맥에 의해 세무조사대상자들간에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7. 납세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A1	30세 이하	2.4118	0.71229	1.497	0.219	
	40세 이하	2.2333	0.69786			
	50세 이하	2.5143	0.81787			
	51세 이상	2.6667	1.11803			

A2	30세 이하	2.8235	1.01460	0.712	0.546
	40세 이하	2.6500	0.93564		
	50세 이하	2.8857	0.75815		
	51세 이상	3.0000	1.32288		
A3	30세 이하	3.6471	0.70189	0.487	0.692
	40세 이하	3.5333	0.92913		
	50세 이하	3.5143	0.95090		
	51세 이상	3.8889	0.92796		
A4	30세 이하	3.3529	0.86177	3.299	0.023**
	40세 이하	2.7000	0.99660		
	50세 이하	2.4857	0.95090		
	51세 이상	2.4444	1.13039		
A5	30세 이하	3.5294	0.94324	0.209	0.890
	40세 이하	3.3667	0.91996		
	50세 이하	3.3143	0.96319		
	51세 이상	3.4444	1.23603		
A6	30세 이하	3.9412	0.55572	0.964	0.412
	40세 이하	3.5333	0.92913		
	50세 이하	3.7143	1.04520		
	51세 이상	3.7778	1.09291		
A7	30세 이하	3.6471	0.70189	1.295	0.279
	40세 이하	3.3333	1.03607		
	50세 이하	3.1143	0.90005		
	51세 이상	3.1111	1.16667		
A8	30세 이하	3.7647	0.83137	0.713	0.546
	40세 이하	3.6833	1.03321		
	50세 이하	3.5714	1.06511		
	51세 이상	4.1111	0.92796		

* p < 0.1, ** p<0.05, *** P<0.01

납세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으며, 세무대리인과는 달리 세무조사원의 재량권 변수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원의 재량권을 제외한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변수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조사원들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연령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령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원의 재량권은 세무조사정도 및 공평성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연령이 높을수록 재량권에 따라 세무조사의 정도 및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학력에 따른 세무조사인식도 차이분석

세무대리인(고졸 : 7명, 대재 : 1명, 대졸이상 : 39명) 과 납세자(중졸이하 : 4명, 고졸 : 52명, 대재 : 10명, 대졸이상 : 55명)의 학력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납세자의 특성 중 학력을 통한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차이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세무대리인의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학력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A1	고졸	3.29	0.756	3.005	0.060*
	대학	5.00	.		
	대졸 이상	3.77	0.706		
A2	고졸	3.29	0.951	1.259	0.294
	대학	5.00	.		
	대졸 이상	3.54	1.022		
A3	고졸	3.86	0.690	1.091	0.345
	대학	5.00	.		
	대졸 이상	4.10	0.754		
A4	고졸	2.71	1.113	.515	0.601
	대학 이상	3.00	.		
	대졸	2.44	0.788		
A5	고졸	4.14	0.690	0.459	0.712
	대학	5.00	.		
	대졸 이상	3.77	0.842		
A6	고졸	3.86	0.690	1.608	0.212
	대학	5.00	.		
	대졸 이상	3.82	0.823		
A7	고졸	3.14	0.900	1.044	0.361
	대학	1.00	.		
	대졸 이상	3.23	0.959		
A8	고졸	4.14	0.690	2.687	0.079*
	대학	5.00	.		
	대졸 이상	4.10	0.502		

* p < 0.1, ** p<0.05, *** P<0.01

세무조사의 공평성에서 학력별로 연령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조사의 엄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공평성과 엄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변수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표본의 수에 문제가 있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9. 납세자의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학력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A1	중졸이하	2.7500	.95743	0.590	0.623
	고졸	2.4231	.89325		
	대학	2.4000	.84327		
	대졸 이상	2.2909	.62872		

A2	중졸이하	3.0000	.81650	0.600	0.616
	고졸	2.6731	.85683		
	대학	2.6000	.96609		
	대졸 이상	2.8727	1.00101		
A3	중졸이하	3.0000	.81650	1.667	0.178
	고졸	3.4615	.89578		
	대학	4.0000	.47140		
	대졸 이상	3.6364	.94992		
A4	중졸이하	3.0000	.00000	0.618	0.604
	고졸	2.6154	.95289		
	대학	2.5000	.97183		
	대졸 이상	2.8182	1.09021		
A5	중졸이하	2.7500	.95743	3.240	0.025**
	고졸	3.1346	.88625		
	대학	3.6000	1.07497		
	대졸 이상	3.6182	.93276		
A6	중졸이하	2.5000	1.00000	5.053	0.003***
	고졸	3.4615	.91740		
	대학	4.2000	.91894		
	대졸 이상	3.8364	.85556		
A7	중졸이하	3.0000	.81650	1.855	0.141
	고졸	3.0962	.93431		
	대학	3.7000	.94868		
	대졸 이상	3.4364	.99561		
A8	중졸이하	3.0000	1.15470	4.211	0.007***
	고졸	3.4038	.99528		
	대학	4.2000	1.03280		
	대졸 이상	3.9273	.92004		

* p < 0.1, ** p(0.05, *** P(0.01

납세자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세무대리인과는 달리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별정도, 세무조사의 업종별 전문성, 세무조사원의 엄정성 변수에서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선별정도와 업종별 전문성, 세무조사원의 엄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변수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납세자들의 경우 대졸이상이 세무조사의 선별정도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며 세무조사를 공평하게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조사원들이 기업들의 업종에 따른 특수성들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일반세무조사 외에 업종별로 전문적인 세무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의 엄정성 측면에서 현재의 세무조사가 엄정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납세자들이 앞으로 더욱 더 엄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에 따른 세무조사인식도 차이분석

세무대리인(4,000만원이하 : 1명, ~8,000만원이하 : 30명, ~8,000만원초과 : 16명)과 납세자(1,000만원이하 : 6명, ~4,000만원이하 : 85명, ~8,000만원이하 : 29명, ~8,000만원초과 : 1명)의 소득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납세자의 특성 중 소득에 따른 차이분석인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10]과 같다.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변수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이 되었다.

소득은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지도에는 소득금액의 차이에 따라 인지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이 모든 세무대리인들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사제도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 세무대리인의 소득에 따른 차이분석

	소득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A1	4,000만원 이하	4.00	.	0.612	0.547
	8,000만원 이하	3.63	0.765		
	8,000만원 초과	3.88	0.719		
A2	4,000만원 이하	5.00	.	1.869	0.166
	8,000만원 이하	3.37	0.999		
	8,000만원 초과	3.75	1.000		
A3	4,000만원 이하	5.00	.	0.759	0.474
	8,000만원 이하	4.07	0.785		
	8,000만원 초과	4.06	0.680		
A4	4,000만원 이하	3.00	.	1.541	0.226
	8,000만원 이하	2.33	0.661		
	8,000만원 초과	2.75	1.065		
A5	4,000만원 이하	5.00	.	0.973	0.386
	8,000만원 이하	3.83	0.834		
	8,000만원 초과	3.81	0.834		
A6	4,000만원 이하	5.00	.	1.152	0.325
	8,000만원 이하	3.87	0.819		
	8,000만원 초과	3.75	0.775		

A7	4,000만원 이하	4.00	.	0.990	0.380
	8,000만원 이하	3.03	0.964		
	8,000만원 초과	3.38	1.025		
A8	4,000만원 이하	4.00	.	0.628	0.538
	8,000만원 이하	4.07	0.450		
	8,000만원 초과	4.25	0.683		

* p < 0.1, ** p<0.05, *** P<0.01

납세자의 경우 소득에 따른 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변수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이 되었다.

세무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인지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무조사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1. 납세자의 소득에 따른 차이분석

	소득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A1	1,000만원 이하	2.5000	0.83666	1.590	0.195
	4,000만원 이하	2.3412	0.73279		
	8,000만원 이하	2.3793	0.86246		
	8,000만원 초과	4.0000	.		
A2	1,000만원 이하	2.3333	1.36626	1.277	0.285
	4,000만원 이하	2.8235	0.95340		
	8,000만원 이하	2.6552	0.72091		
	8,000만원 초과	4.0000	.		
A3	1,000만원 이하	3.8333	0.40825	0.275	0.843
	4,000만원 이하	3.5647	0.95677		
	8,000만원 이하	3.5172	0.82897		
	8,000만원 초과	4.0000	.		
A4	1,000만원 이하	3.0000	1.54919	0.620	0.603
	4,000만원 이하	2.7529	0.97475		
	8,000만원 이하	2.5517	0.98511		
	8,000만원 초과	2.0000	.		
A5	1,000만원 이하	3.0000	1.54919	1.208	0.310
	4,000만원 이하	3.3176	0.92854		
	8,000만원 이하	3.6207	0.86246		
	8,000만원 초과	4.0000	.		
A6	1,000만원 이하	4.0000	1.09545	0.325	0.807
	4,000만원 이하	3.6471	0.95998		
	8,000만원 이하	3.6207	0.86246		
	8,000만원 초과	4.0000	.		
A7	1,000만원 이하	3.0000	1.09545	0.608	0.611
	4,000만원 이하	3.3529	0.94750		
	8,000만원 이하	3.1724	1.03748		
	8,000만원 초과	4.0000	.		
A8	1,000만원 이하	4.5000	0.54772	1.832	0.145
	4,000만원 이하	3.5882	1.01529		
	8,000만원 이하	3.8276	1.00246		
	8,000만원 초과	4.0000	.		

* p < 0.1, ** p<0.05, *** P<0.01

V.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현행 세무조사가 얼마나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세무조사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무조사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세무조사원의 인원과 전문성,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별정도, 세무조사의 엄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서만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별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조사의 공평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원의 재량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조사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엄정성에서,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의 선별정도, 세무조사의 업종별 전문성, 세무조사의 엄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서 세무조사의 인식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 전체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들이 판단하는 세무조사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법에 대한 인지나 세무조사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세무대리인들과 납세자들을 올바르게 인지 및 교육을 시키고 정책적인 입안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납

세자들의 응답을 연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납세자들의 설문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았으며, 설문지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수행하였으나 그 수가 세무대리인과 마찬가지로 표본이 적었다.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가 법인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연구 및 법인의 회계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 김영조,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3] 안종만, 납세관련자의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4] 이창훈, 조세범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 전형수,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6] 정대희, 세무조사의 운영실태 고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7] 홍순복, 심호석,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이론과 현실", 회계정보연구, 제11권, 1999.
 [8] 한국조세연구원, "납세서비스 세정의 선진화 방안", 2001.
 [9]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백서, 2000.
 [10] Alm, Jame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Handbook of Taxation, edited by W. Bartty Hildreth and James Richardson, 1999.
 [11] K. John and Mcnulty,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Group, 1999.
 [12] A. Willam, Raabe, E. George, Whittenburg, C.

John and Bost, "West's Federal Tax Research (4th Edition)," South-western, 1997.

[13] James, Simon, and W. Ian, "The Shape of Future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5.
 [14] P. J. Wilkie and S. T. Limber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 a Reconciliation of Zimmerman(1983) and Porcano(1998),"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 1990.
 [15] C. Omer, Thomas, H. Karen, Molloy, and A. Z. David,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3, 1991.

저 자 소 개

김진섭(Jin-Sep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1997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재무회계, 세무회계